

**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산정기준 미준수 및
뷰티풀파크관리공단 위탁운영 적정성 관련
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보 요약**

2026.09.15. 기준

1. 사건 개요 및 현재 상황

구분	주요내용
인천시 공식 경고	인천광역시 산업입지과는 2026.5.12. 뷰티풀파크관리공단에 「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 미준수에 따른 경고 및 조치방안 마련 요청」(산업입지과-4605) 공문을 시행함.
산정방식 쟁점	- 조례 기준: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폐수 배출시점에 월 3회 이상 채수·분석한 오염농도를 토대로 비용부담금을 산정하는 구조임. 3개사 협약: 실제 월별 오염농도를 새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2019.10.21.~2020.10.20. 특정기간의 평균 오염농도를 이후 비용부담금 산정에 적용하는 내용의 협약이 존재함.
언론보도 및 내부 공익제보	2026.4.22. 인천시청 기자회견에서 공단 내부 직원이 식품업체 3곳에 과거 특정기간 평균농도를 계속 적용했다는 문제를 제기함. - 첨부 언론보도에서는 이로 인한 비용부담금 차이를 약 59억원 상당으로 추정한다는 내부공익제보자의 주장이 보도됨. ※ 약 59억원은 내부 공익제보 관련 기자회견 관련 언론보도에 제시된 추정치로 확정 과소징수액 또는 재정손실액은 아님.
현재 진행상황	5.12. 인천시의 경고 및 조치방안 마련 요청 이후, 뷰티풀파크관리공단이 2026.8.11. 해당 공문에 대한 회신문을 인천시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. - 인천시 접수번호: 산업입지과-7677

2. 행정사무감사 핵심 검증사항

검증 분야	행정사무감사 주요 확인사항
① 별도 산정방식	- 왜 일부 업체에 특정기간 평균농도를 적용하는 별도 방식이 사용되었는지 - 이를 결정하거나 승인한 근거와 절차는 적정했는지
② 별도 산정방식이 장기간 지속된 이유	- 이러한 산정방식이 언제부터 얼마나 오래 적용됐는지 - 인천시는 언제 이를 알았으며 그동안 관리·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- 과거 채수·수질분석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
③ 경고 이후 시정조치	2026.5.12. 경고 이후 사용료를 다시 검토했는지 추가징수·환급 등 필요한 조치가 검토·시행되었는지와 그 결과
④ 인천시의 후속 관리	- 공단이 8.11. 제출한 조치 회신문 및 첨부자료를 인천시가 제대로 검토했는지 -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나 보완조치를 요구했는지 -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채수·산정·검증 절차를 개선했는지
⑤ 위탁운영 적정성	- 산정기준 미준수로 공식 경고까지 받은 공단에 폐수처리시설 운영을 계속 맡기는 것이 적정한지 - 인천시가 위탁운영 적정성을 별도로 평가했는지, 계속 맡긴다면 그 객관적 근거와 개선조치는 무엇인지

⑥ 경고·제재 수준의 적정성	• 산정기준 미준수의 기간·범위·영향을 고려할 때 인천시의 경고조치가 적절한 수준이었는지 • 경고 외에 위탁협약 등에 따른 추가 제재·시정명령·평가위탁조건 변경 등 다른 조치를 검토했는지 • 경고 수준으로 결정한 객관적인 판단근거와 내부 검토과정이 존재하는지
-----------------	--

3. 행정사무감사 필수 확인 자료

- ① 2026.5.12. 인천시 경고공문 원본
→ 산정기준 미준수의 구체적 내용과 인천시의 판단·조치사항 확인
- ② 2026.8.11. 공단 회신문 및 전체 첨부자료
→ 경고 이후 공단이 실제로 취한 시정조치와 이행내용 확인
- ③ 일부 업체에 적용된 별도 협약서 및 승인·의사결정 자료
→ 별도 산정방식의 근거와 결정·승인 과정 확인
- ④ 해당 업체의 채수·수질분석자료 및 비용부담금 산정 원자료
→ 실제 오염농도와 비용부담금 산정·부과의 적정성 검증
- ⑤ 경고 이후 사용료 재검토 및 추가징수·환급 검토·처리자료
→ 과거 부과내역의 재검토 결과와 실제 정산 여부 확인
- ⑥ 외부 회계검증을 실시했다면 검증범위·결과보고서
→ 사용료 산정·부과·징수에 대한 객관적인 회계검증 결과 확인
- ⑦ 산정기준 미준수 이후 인천시의 공단 관리·감독 조치 및 위탁운영 적정성 검토자료
→ 문제 확인 이후 인천시의 관리·감독 조치가 적정했는지와 공단에 계속 운영을 맡기는 판단근거 확인

4. 제보 취지 및 공익상 필요성

-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부담금은 다수 입주업체에 적용되는 공적 비용부담인 만큼, **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·부과되었는지** 확인할 필요가 있음.
- 인천시가 산정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공식 경고한 사안인 만큼, **별도 산정방식이 발생·지속된 경위와 인천시의 관리·감독이 적정했는지**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.
- 산정기준 미준수의 **기간·범위 및 영향에 비추어 인천시의 경고·제재 수준이 적정했는지**, 경고 이후 실제 시정·정산 및 재발방지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.
- 산정기준 미준수 문제가 확인된 이후에도 뷰티풀파크관리공단에 시설 운영을 계속 맡기는 경우, **위탁 운영의 적정성과 계속 위탁하는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지** 검증할 필요가 있음.
- 본 제보는 특정 업체나 관계자의 위법·특혜 또는 책임을 미리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, **공식 경고가 이루어진 사안의 발생원인·관리감독·제재·후속조치 및 계속 위탁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** 달라는 취지임.